

더불어민주당, 장영하 국민의힘 특위 위원 후보자비방죄 검찰 고발 ... 공직수행 자격검증 무관한 이 후보 “낙선 목적 비방” 의도 명백

- 19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통화녹음 공개 및 SNS 게재 낙선 목적 뚜렷
- 2014년 법원서 이미 공익성 인정 어려워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 내려진 사안과 동일
- 피고발인 장영하는 허위 제보 및 거짓 기자회견 등 상습적 허위사실공표 전력 있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재명 후보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34건을 공개한 국민의힘 이재명 국민검증특위 소속 장영하를 후보자비방죄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피고발인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 수행 자격과는 무관하게 형과 형수와의 다툼 과정에서 욕설한 녹음파일을 공개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은 명백한 후보자비방죄에 해당한다” 고 밝혔다.

이어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신뢰성과 객관성이 훼손됨은 물론 임박한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오도하는 중대한 결과가 야기되고, 이는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으므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국민검증법률지원단 소속 김용석 변호사를 통해 19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국민의 힘 소속 윤석열 후보의 당선 및 이재명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기관에 위 통화 녹음을 공개한 것이므로, 그간의 판례 법리에 의할 때 당선 또는 낙선 목적은 넉넉히 인정된다” 고 지적했다.

또한 “후보자가 욕설을 하게 된 특수한 경위를 고려하여 볼 때, 단순히 이재명 후보자 가족 내부적인 다툼의 과정에서 일어난 일에 불과하며, 이재명 후보 본인의 공직

수행자격 검증에 필요한 공익적 사안도 아님이 명백하다” 고 덧붙였다.

이 후보 욕설 녹음파일과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 “비록 채권자가 인구 100만 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어서 채권자의 인격 등을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와 같은 경우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보다 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녹음파일 게시의 동기가 채권자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위와 같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동기는 명목상의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다” 며, 배포 금지 가처분 결정까지 내린 바 있다(수원지법 성남지원 2014.2.5. 2013카합341 결정).

피고발인은 이미 2021년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위 제보로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국회윤리심사특별위원회에 제소되게 만든 전력이 있으며, 성남국제마피아파 조직원인 박철민이 이재명 측에대 돈다발을 전달했다는 진술이 허위임 자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편지를 전달받아 김진태 이재명 국민검증특별위원장에게 전달한 장본인이기도 하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1조(후보자비방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候補者가 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